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서울지방보훈청란의 보훈지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의 광주지방보훈청란의 보훈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37”을 “334”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0”을 “31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103”을 “1,0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03”을 “1,09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를 “1,06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7</u>	<u>334</u>	-3
•	•	•	
•	•	•	
일반직 계	<u>333</u>	<u>330</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0</u>	<u>317</u>	-3
•	•	•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03</u>	<u>1,096</u>	-7
일반직 계	<u>1,103</u>	<u>1,096</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75</u>	<u>1,068</u>	-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